

체신법

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

제 1 장 체신법의 기본

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은 체신부문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기통신, 우편통신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.

제 2 조 체신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하는 봉사수단이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신기관,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한다.

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신정책에 의하여 체신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러졌다.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체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다.

제 4 조 전기통신은 현대통신의 기본수단이다. 국가는 유선, 무선전화통신과 텔렉스, 팩스 같은 같은 전신통신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여 전기통신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.

제 5 조 우편통신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. 국가는 우편통신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우편통신수단을 늘려 우편물이 수요자에게 더 빨리,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.

제 6 조 방송시설운영은 방송의 중요공정이다. 국가는 방송시설운영체계를 바로 세우고 방송을 다양화하여 늘어나는 방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.

제 7 조 체신시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. 국가는 체신시설에 대한 과학지식 보급사업과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신시설을 사랑하고 적극 보호 관리하도록 한다.

제 8 조 국가는 체신활동에서 신속성, 정확성, 비밀을 보장하며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 이도록 한다.

제 9 조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, 규범화하도 록 한다.

제 10 조 국가는 체신분야에서 다른 나라,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.

제 2 장 전기통신

제 11 조 전기통신을 보장하는 것은 체신의 기본사명이다. 체신기관, 기업소는 전기통 신조직과 운영을 짜고들어 국가지휘통신, 산업통신, 인민생활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. 국가지휘통신은 우선 보장한다.

제 12 조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늘어나는 전신, 전화의 수요에 맞게 전기통신 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. 전망계획의 승인 은 내각이 한다.

제 13 조 체신기관, 기업소는 전기통신회선수를 늘리며 현대 체신과학기술발전의 요구 에 맞게 중앙과 도(직할시), 도(직할시)와 시(구역), 군 사이의 통신선로를 현대화하며 전 국의 전기통신망을 자동화하여야 한다.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문화성이 보장되지 못 한 통신선과 전선대 같은 통신시설을 제때에 정리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체신기관, 기업소는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,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 통신 시설운영을 컴퓨터화하고 전화의 질과 봉사성, 전화회선의 이용률을 높이며 전보중계시 간을 줄여야 한다

제 15 조 체신기관, 기업소는 국제전기통신의 방향별 회선수를 늘리고 새로운 통신방식 을 받아들여 국제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해당기관, 기업소, 단체는 구내전화설비에 대한 계획적 예방보수와 정비사업을 실속 있게 하여 구내전화의 기술지표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시설, 설비를 정해진대로 이용하여야 한다.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,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수, 이설, 폐기할 수 없다.

제 18 조 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 국가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.

제 3 장 우편통신

제 19 조 우편통신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사업이다. 체신기관, 기업소는 편지, 전보, 소포, 정기출판물 같은 우편물의 체송과 전달공정을 합리적으로 맞물리며 우편통신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도시와 농촌의 실정에 맞게 우편국, 체신소, 체신분소를 배치하고 우편업종을 늘려야 한다. 우편업종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.

제 21 조 체신기관, 기업소는 우편물 취급공정과 체송수단을 기계화, 자동화하며 점차 전자우편을 실현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체신기관, 기업소는 우편통신업무를 정규화하며 우편통신의 정확성과 문화성,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 우편용품은 규격화, 표준화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체신기관과 교통운수기관, 해당기관은 철도우편차량, 우편자동차, 비행기 같은 우편수송수단을 늘려 우편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.

제 24 조 세관과 검역기관은 국제우편물을 다른 짐보다 먼저 검사, 검역하여야 한다. 체신기관, 기업소는 국제우편물의 도착, 출발시간을 해당 세관이나 검역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.

제 25 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기관은 우편통신원, 체송승무원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. 철도역, 무역항, 비행장 같은 데는 우편물을 싣고 부리는 장소와 우편물 통로를 정하며 우편수송수단을 제때에 통과시켜야 한다.

제 26 조 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우편물의 규격, 형식, 기준질량, 포장방법 같은 것을 지켜야 한다. 문건, 신분증명서, 화폐, 양곡, 폭발물, 독성물질,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같은 것은 우편으로 보낼 수 없다.

제 27 조 해당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공민은 전달할 수 없게 된 우편물을 발송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. 전달할 수 없거나 돌려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정해진 데 따라 처리한다.

제 28 조 국제우편통신업무는 해당 체신기업소가 한다. 해당 체신기관, 기업소는 국제우편통신수단을 현대화하여 늘어나는 국제우편통신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29 조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체송, 전달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. 그러나 자연재해, 발송자의 허물, 우편물자체 원인 같은 것으로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
제 4 장 방송시설운영

제 30 조 방송시설운영을 잘하는 것은 체신기관의 중요임무이다. 체신기관, 기업소는 방송국, 방송중계국, 중계소의 방송기, 안테나, 중계기 같은 방송시설운영과 방송프로의 전송, 중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해당 체신기관, 기업소는 방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와 측정, 조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최신방송기술수단과 새로운 방송방식을 받아들여 방송의 출력과 질을 높이고 주파수를 늘려야 한다.

제 32 조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텔레비전방송망과 그 중계체계를 완비하고 방송통로를 늘리며 텔레비전교육방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텔레비전방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한다.

제 33 조 체신기관, 기업소는 유선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정해지 기술기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. 유선방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정해진 방송프로를 중계하며 그 중계시간을 지켜야 한다.

제 34 조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우고 각종 경보방송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시험운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.

제 35 조 해당기관, 기업소, 단체는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살림집과 작업장, 공공장소에서 유선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 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해당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.

제 36 조 체신기관은 주파수관리체계를 바로 세워 전파이용의 효과성을 높이며 여러 가지 전파장애를 제때에 극복하여야 한다. 해당기관, 기업소, 단체는 장애전파설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운영하여 통신, 방송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.

제 37 조 우리 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, 기업소, 단체, 공민은 무선방송설비, 위성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.

제 5 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

제 38 조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체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.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체신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맞물려하여야 한다.

제 39 조 체신기관, 기업소는 국가지휘통신망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전국적인 수자식 종합통신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여야 한다.

제 40 조 체신기관,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우편국, 체신소, 체신분소 같은 우편물취급단위를 문화적으로 꾸리고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, 자동화하여야 한다. 중요철도역, 항공역, 무역항, 호텔 같은 데는 통신취급실을 설치한다.

제 41 조 체신기관, 기업소는 방송세력이 모든 지역에 미칠 수 있게 방송국과 방송중계국, 중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. 방송국과 방송중계국, 중계소의 위치는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곳에 정하여야 한다.

제 42 조 체신기관,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체신설비, 자재,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.

제 43 조 체신부문의 과학연구기관은 통신능력과 방송출력을 높이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며 체신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야 한다.

제 44 조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체신부문의 기술자, 기능공양성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신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기술자, 기능공양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.

제 45 조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자연환경, 농업자원, 산림자원에 피해가 없도록 체신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. 체신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해당기관이 한다. 해당기관의 입회 밑에 기관, 기업소, 단체도 할 수 있다.

제 46 조 체신시설물의 이용권은 체신기관의 합의 없이 다른 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 수 없다.

제 47 조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, 전력공급기관, 자재공급기관, 재정은행기관은 체신부문에 필요한 노력, 전력, 설비, 자재,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

제 48 조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체신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. 국가는 체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 부문에서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도록 한다.

제 49 조 체신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.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, 우편통신보장과 방송시설운영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.

제 50 조 체신기관은 방송전파설비, 장애전파설비의 등록, 운영허가질서를 세우고 전파감독장비를 현대화하여 전파감시의 주파수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.

제 51 조 체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.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신속성, 정확성, 안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.

제 52 조 이 법을 어기고 통신, 방송에 지장을 주었거나 비밀을 누설, 침해한 기관, 기업소,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.